

# 장기요양기관 및 보수교육기관 필독

## 1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11조의3(보수교육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)

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(이하“보수교육”이라 한다)을 면제한다.

### ○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(12.31.)까지 면제

- 2022년 합격자 → 23년, 24년 면제 →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- 2023년 합격자 → 24년, 25년 면제 →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- 2024년 합격자 → 25년, 26년 면제 →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
### ○ “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”은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

… 「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」

※ ‘요양보호사 자격증’에는 자격증 ‘교부년도’ 또는 신규발급 경우, ‘자격 취득일’만 확인됨

※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 관리필요

## 2. “합격확인서” 발급방법(합격일 또는 합격연도 확인)

…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(이하 국시원)의 공식 답변

### ○ 국시원 로그인 → 면허·자격·증명서 → 증명서 발급신청 → 합격확인서 발급 (유료 1,000원/1통)

- 응시원서 접수 시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야 응시이력 확인 가능

- 단체(교육기관)로 응시원서 접수한 경우,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‘과거시험 정보 찾기’를 통해 접수이력 연동 후 발급가능

### ○ 인터넷 발급 어려울 경우, 국시원 직접 방문 또는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 이용

※ 국시원 고객센터 : 1544-4244

### ○ 국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합격 문자도 면제자 증빙자료로 인정함

(문자 캡처 -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출)

※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발급 → 2023.1.1. 이후 국시원에서 수행

#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확인사항

## <출석기준!!>

### ★ 허위출석, 대리수강 엄벌

...보수교육결과를 거짓, 허위로 보고한 경우, 시정권고 없이 지정취소

1. 교육기관은 출석부(서식 제10호)를 사용하며, 신분증 등을 통해 **최소 3회(시작/오후/종료)** 이상 교육생의 본인 여부를 확인

※ 출석부는 **정자로 성명**을 기재 원칙(서명, 지문 금지)

※ 당일 교육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, 최소 2회(시작/종료)

2. 교육생 출결관리 시 전자출결시스템 활용도 가능하나, 출석부의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
3. 출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전자문서 포함)는 3년간 보관
4. 온라인 교육의 경우,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-PIN 등을 통한 본인 인증 기능 필수

## <보수교육기관 필수 안내사항!!>

- 온라인+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요양보호사는 **온라인 교육(4시간)을 먼저 수강**후, 대면교육(4시간)을 받아야 함
- 온라인 교육기관은 온라인 교육생에게 **수강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** 온라인 수강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, 온라인 수강 완료 후 60일이내(당해 연도 내) 대면교육을 이수하도록 최소 3회 이상 독려
- 온라인 교육기관은 온라인 수강완료자가 "**온라인(4시간) 수강(수료)확인증**"을 출력하도록 안내하고, 대면교육기관에 온라인 수강확인증을 제시하여 다,라 영역에 대해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
  - ※ 온라인 수강완료(가,나영역)한 교육생은 대면교육(다,라 영역)을 이수하여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이수완료됨을 충분히 안내
- 대면교육은 1일 8시간 교육이수가 원칙이나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 분할 수강 가능
  - ※ 같은 월 초일~ 말일까지를 의미, 4개 필수영역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
- 대면교육기관은 최종 이수가 완료된 교육생에게 별지 제9호의4 서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함 (QR코드 만족도 조사 필수)

## <이수증 발급관련 안내사항>

- 대면교육 이수자는 4개 필수영역별 2시간씩, 총 8시간 수강 완료시 발급
  -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온라인 4차시 수강 완료 후, 대면교육 4시간 수강 완료한 날, 대면교육 실시기관장이 발급
- ※ 온라인 교육기관은 수강자가 수강확인증(수료확인증)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를 운영하고, 대면교육을 수강하여야 보수교육이 이수완료 됨을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

## <기타 사항>

### 1. 보수교육 관련 서식 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- 알림·자료실 - 서식자료실 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관련 서식 모음집

### 2. 서식 수정 안내

- 서식9> 보수교육비 수납대장 : 생년월일 → **주민번호**
- 참고3>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보유 및 이용기간 : 1년 → **3년**

### 3. 「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」 중 추가 안내

#### 2 교육과정 p.32

나. 대면교육 강의 운영은 1일 8시간 중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생·교육기관의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

→ 교육생의 효율적 수업과 기관별 과도한 편차 예방위해 '50분 강의 10분 휴식' 또는 '100분 강의 20분 휴식' 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6 행정사항 p.37

나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정보 게시

1)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 실시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, 변경 될 경우 지체 없이 변경하여 게시하여야 함.

-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
- ② 보수교육 과정의 정원, 교육일정, 교육내용, 강사명
- ③ 그 밖에 보수교육 이용에 필요한 사항

→ '교육일정,교육내용,강사명'은 보수교육기관 일정관리에서 변경되나, 교육기관 명칭 및 소재지, 정원 변경 시에는 공단에 '변경신고서'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공단의 변경된 전산자료로 연계되어 게시됨

#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다빈도 Q&A

## <Q1. 장기요양기관 >

- 장기요양기관에서 단체 신청하면 개인정보동의서와 비용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단체로 받아 접수를 해야 하나요?

- 아니오, (참고3)보수교육 실시를 위한 동의서와 교육비 결제 등 수납은 보수교육기관에서 수행합니다.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단체신청서와 접수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명부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도와주시면 됩니다.

## <Q2. 보수교육 기관 운영>

- 보수교육 교안을 다른 교육에 활용해도 될까요?

- 아니오, 보수교육 강사용 지침서 및 보수교육 표준 교안은 보수교육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함

(참고)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“보수교육 실시기관 준수사항” (p.24)

## <Q3. 보수교육 기관 운영>

-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게 식사를 지원해도 될까요?

- 아니오, 교육생에게 대접하는 “식사”는 교육비 할인에 갈음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식사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.

(참고)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“보수교육 실시기관 금지사항” (p.25)

## <Q4. 보수교육 기관 운영>

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월별 실적 제출서식에 “주민등록번호” 를 꼭 적어야 하나요?

- 네,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목적 등 개인정보 동의를 설명 후 받으시고, 월별 실적 보고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.

### <Q5. 보수교육기관 운영>

- 저희 보수교육기관은 협회의 “온라인 교육” 수강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, 대면교육 다,라 영역만 수업예정입니다. 특정 수업영역만 선택해서 운영해도 되나요?

- 아니오, 교육생의 대면교육 이수방법의 원칙은 대면 교육기관에서 1일(8시간)교육 이수 원칙(지침9p)이며, 대면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4개의 필수 영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영역별로 다양한 교육 과목을 개설, 운영해야 함으로 명시됨

(참고)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“교육운영기준 및 행정사항” 중 교육과정 (p.25)

### <Q6. 보수교육 강사>

- 교육기관장이 강사를 할 수 있나요?  
 강사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출강해서 강의해도 되나요?

- 교육기관장이 강사 자격을 갖추고, 전담직원(행정요원) 1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교육기관 내 강의 할 수 있습니다.  
-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당초 지정받은 교육장소 또는 교육사이트에서 교육하여야 합니다.

### <Q7. 보수교육 강사>

- 교육기관장이 하루 중 강사로 활동하는 4시간 외에 행정요원으로 근무해도 되나요?

- 아니오, “보수교육 실시 일” 기준으로 교육기관장 또는 행정요원인지 구분하여 교육기관 내 상주하여야 합니다. 해당 일에 강사로 활동하는 교육기관장은 “강사”배치 인력으로 기준합니다.

(참고)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“직원배치기준” (p.19)

교육기관장 또는 전담직원(행정요원) 중 1인은 보수교육 실시 일에 교육 기관 내 상주하여야 한다.

### <Q8. 교육기관 강사 보수교육>

강사 보수교육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, 4월에 보수교육 실시를 못하나요?

- 아니오, 2024년, 2025년 보수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,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강사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.
- 그리고, 6개월 유예기간 종료 후, 강사가 변경된 경우는 강사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### <Q9. 강사의 자격 및 경력 >

자격기준 ②항,③항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중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해당되나요?

- ②항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, 또는 ③항의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,
-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분야 담당자로 근무한 경우 인정되며,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서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, 장기요양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, 장기요양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한 강사자격 요건(24. 3월 협의)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강사변경 시 참고

### <Q10. 강사의 자격 및 경력>

강사 자격기준③항 관련, 학사학위가 있는 간호사입니다.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6개월 근무했고, 보건교사로 3년 근무했습니다. 강사자격이 될까요?

- 네, 보건교사는 교사로서의 업무도 있으나, 학교 내 학생들의 응급처치, 상처간호 등 기본간호의 처치가 이루어 지므로, 간호사 업무로 인정합니다.

※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한 강사자격 요건(24. 3월 협의)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강사변경 시 참고

### <Q11. 보수교육 면제대상>

시범운영 시 보수교육 이수자도 보수교육을 또 이수하여야 하나요?

- 또한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('23.8~10월) 내 교육 이수자는 '24, '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, 보수교육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.